

I. 들어가며

비극으로 끝난 사랑 이야기(L'histoire d'amour finit mal)

지난 2019년 10월 16일 프랑스 북부에 위치한 릴을 중심으로 이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지인 <라 부아 뒤 노르(La Voix du Nord)>는 이 같은 제목의 기사를 온라인에 게재했다. 이는 곧 온라인 상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들이 지난 18일 여성단체인 ‘#누 투트(#Nous Toutes)’¹⁾는 트위터에 해당 기사의 제목을 비판하는 트윗을 올렸다.

『그는 자녀들 앞에서 아내를 불로 희생시켰다. <라 부아 뒤 노르>에게 이는 하나의 애정극이다. 진심인가? 이 폭력들은 결코 로맨틱하지 않다(Le mari immole sa femme par le feu devant leurs enfants. Pour La Voix du Nord, c'est une histoire d'amour. Vous êtes sérieux? Les violence ne sont PAS romantique).』²⁾

<라 부아 뒤 노르>는 같은 날 바로 해당 트윗에 공식 답변을 남겼다. 그들은 이 같은 지적이 합당하다며 공식 사과와 함께 문제가 된 기사의 제목을 수정했다.

‘#미투(#Me Too)’ 운동을 기점으로 최근 몇 년 간 프랑스 내에서도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현 배우자 혹은 연인 관계에 있는 남성이 상

* 파리 소르본 대학 사회학 석사과정, mcdjrp@gmail.com

1) 이 단체는 전 세계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렸던 ‘#미투(#Me Too)’ 운동의 영향을 받아, 2018년 7월 3일 프랑스에서 조직되었다. 특정 지도자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으며, 시민들과 여타 조직들의 집합체이다. 법인 성격의 협회(Association)보다는 집단 모임(Collectif)의 성격을 지닌다. 이 단체는 성범죄 뿐만 아니라 경제적, 물리적, 그리고 언어적으로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차별에 반대한다. 이에 따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가두시위를 조직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프랑스 언론들이 성범죄를 다루는데 있어 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감시하며 문제가 되는 사례들은 트위터에 공개한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 단체는 사회네트워크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구독자가 11만 2000명을 넘으며, 페이스북 그룹 페이지에는 약 7만 1500개, 트위터에는 약 2만 4500개의 게시글이 공유되고 있다(Moghaddam, 2019).

2) <https://twitter.com/noustoutesorg/status/1185085747130519552>

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 보완과 사회 의식 향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와 같은 살인사건을 ‘여성 살해(Féminicide)³⁾’로 규정하며, 앞선 사례처럼 이를 치정극 혹은 ‘가정 내 비극(Drame familial)’, ‘개인적 범죄(Crime personnel)’로 명명하는 데 반대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성범죄 보도와 관련한 프랑스 언론의 변화도 이끌어 내고 있다. 최근 몇 년 간 신문, 방송, 라디오를 망라한 프랑스 언론들은 성범죄를 다루는 데 있어 적합한 표현을 사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가정 내 비극’이 아닌 ‘배우자에 의한 살해(Meurtre conjugal)’ 또는 ‘여성 살해’의 사용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Moghaddam, 2019).

프랑스에서도 성범죄 언론보도는 그 특성 상 피해자와 피의자 혹은 혐의자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세심함을 요구하며 이와 관련한 제도적 규율이 마련되어 있다. 언론노조 혹은 언론계 자체적으로 이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앞선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 움직임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언론들이 성범죄를 다루는 데 있어 여러 한계와 문제점을 노출했으며 이는 몇몇 사례를 통해 드러난다.

이 글에서는 성범죄 보도와 관련한 프랑스 내의 제도적·법적 차원의 규제책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한 사례로 프랑스에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우트로 사건(Affaire Outreau)을 통해 당시 프랑스 언론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와 무죄추정 원칙 훼손 사례를 알아보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 등을 짚어볼 것이다. 이

3)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정의를 따르면(2012), 여성 살해(Féminicide)는 ‘여성에 대한 의도적인 살인(l’homicide volontaire d’une femme)’이며 더 구체적으로는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들 혹은 소녀들에 대한 살인(définitions plus larges qui incluent tout meurtre de filles ou de femmes au simple motif qu’elles sont des femmes)’을 포함한다. 또한 WHO는 ‘여성 살해는 대부분 남성에 의해 일어나며(le féminicide est généralement commis par des hommes)’ 대부분의 여성 살해 사례는 현 파트너 혹은 전 파트너에 의해 자행된다(la plupart des cas de féminicides sont commis par des partenaires ou des ex-partenaires)’고 밝혔다. 이러한 범죄에 노출된 ‘여성들은 파트너들보다 적은 권력 혹은 자원을 지니고 있다(les femmes ont moins de pouvoir ou moins de ressources que leur partenaire)’라고 적시하였다.

프랑스 내에서 이 용어는 2014년 정부에 의해 새로운 단어 인정받아 ‘인문학과 법학 용어집(Vocabulaire du droit et des sciences humaines)’에 등재되었다. 하지만 형법상 용어로는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또한, 이 단어의 활용과 관련하여 여전히 논쟁이 있다. 일부에서는 이 단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법적 지위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반대쪽에서는 이미 이와 같은 범죄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있으며 기존의 법률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먼저라는 목소리도 있다(Causit, Leclercq, 2019).

어 레오노르 르 캔(Léonore Le Caisne)의 리디아 사건(Affaire Lydia)과 프리츨 사건(Affaire Fritzl)의 비교 연구에서 드러난 프랑스 언론의 성범죄에 대한 뉴스 가치판단과 뉴스 프레임화에 대해 살펴보겠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전 총재였던 도미니크 스트로스-칸(Dominique Strauss-Kahn)의 성추문 보도에 나타난 프랑스 언론계에 관행적인 문제점과 이에 대한 비판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프랑스 언론계 차원의 성범죄 보도 행태의 새로운 움직임과 이를 둘러싼 사회적 압력을 소개하도록 한다.

II. 성범죄 보도 관련 제도적 규율

1. 언론의 자유를 둘러싼 법적 배경

프랑스에서 언론의 자유를 법적으로 규정한 것은 1881년 제정된 ‘언론자유에 관한 법률(La loi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 이하 언론자유법)’이며, 이는 1789년 8월 26일 프랑스 혁명 당시 선포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이하 권리선언)’에 근거한다(박진우, 2007). 이처럼 프랑스에서 언론의 자유는 긴 역사를 관통하며, 문화와 정치 등 다양한 사회적 맥락 위에서 형성되었다. 특히, 권리선언 11조가 이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조항은 의견과 사고의 자유로운 소통은 인간에게 가장 귀중한 권리 중 하나이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은 법에 의해 규정된 자유의 남용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말하고, 쓰고, 인쇄할 수 있다고 선언한다. 즉, 의사소통의 자유, 그리고 이를 구현하는 중요한 통로 중 하나인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 프랑스 사회에 깊게 뿌리 내린 것이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프랑스에서 언론의 자유는 권리선언과 민주주의의 역사라는 강력한 토대 위에서 정당화되었다. 이는 동시에 언론의 자유 제한과 관련한 헌법적 판례를 찾아보기 어렵게 만드는 배경이 된다. 물론, 이를 사전에 규제하는 법률적 내용이 드물지만 존재한다. 하지만 이를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극히 어려우며, 그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다. 사후적 규율 역시, 파기원(La Cour de cassation)이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다(Lamy, 2012).

한 예로 프랑스헌법위원회(Le Conseil constitutionnel)는 2010년 5월 28일 결정문에서 의사소통의 자유(La liberté de communication)는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이며 다른 권리들과 자유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는 요소 중 하나라고 규정하였다. 의사소통의 자유는 다른 시민적 자유를 위해 가장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Montalivet, 2012). 물론 의사소통의 자유가 곧 언론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엄밀하게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하지만 프랑스의 헌법적 체계 내에서 개인의 의사를 개진하고 표현하는 것은 항상 최우선으로 고려되었으며, 그에 따라 이를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언론의 법적·사회적 지위 또한 견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랑스에서 언론의 자유가 지니는 헌법적 가치와 사회적 의미는 지난 해에서야 모습을 보인 ‘저널리즘윤리중재위원회(CDJM, Le Conseil de déontologie journalistique et de médiation)’를 둘러싼 논쟁에서도 드러난다. 프랑스 역사 상 언론과 이용자를 중재하는 독립기관이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DJM에 따르면, 언론 중재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은 전 세계적으로 약 100개에 달하며 유럽 연합 내에서도 18개 국가에서 언론중재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관은 편집인과 언론인, 언론매체, 그리고 공익 대표단으로 구성되며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한다.⁴⁾

프랑스에서 언론중재기구의 도입이 상대적으로 늦은 이유는 프랑스의 헌법적 가치가 언론의 다양성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같은 중재기구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최근에 실제 설립으로 이어진 데에는 미디어에 대한 대중의 높은 불신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특히, ‘가짜 뉴스’로 대변되는 허위정보 문제와 2018년 ‘노랑 조끼(Gilets jaunes)’ 시위에서 보인 프랑스 언론들의 정부 편향적 보도로 인해 언론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디지털 뉴스 2019’에 따르면, 프랑스 시민들의 뉴스 신뢰도는 24%를 기록했다(최지선, 2020). 이와 같은 맥락에서 독립된 언론중재기구의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지난해 첫 발을 떼게 되었다.

CDJM을 바라보는 언론계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일부 언론인들은 ‘언론에 대한 평가는 독자의 몫’이라며 중재기구에 반대의를 표명하였고, 특정 언론매체들 역시 적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해당 기구가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4) <https://cdjm.org/presentation/>

언론 활동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최지선, 2020). 이 사례를 통해 프랑스에서 언론의 자유는 선불리 건드릴 수 없는 헌법적 가치임에 따라, 정부 혹은 제3자의 개입은 최소한으로 자제되었으며 이에 대한 저항도 거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무죄추정의 원칙

프랑스 언론자유법은 언론의 자유가 남용됨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기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들도 담고 있다. 즉, 반론권과 정정보도청구권, 명예훼손 등의 피해구제책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진민정, 2018).

성범죄는 물론, 전반적인 범죄 보도와 관련해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혐의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2000년 9월 19일 개정안에 따라 언론자유법 제35조는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혐의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수갑을 차고 있는 모습 혹은 임시 구류 중인 모습을 담은 이미지를 공개할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과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1만 5000 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명시하고 있다(Lamy, 2012). 또한, 형사소송 개혁에 관한 법(Loi n° 93-2 du janvier 1993 portant réforme de la procédure pénale)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재판 과정 중 언론에 의해 무죄추정의 원칙이 침해된 자는 사후적으로 이와 관련하여 법적 행동을 취할 수 있다(Dupeux, 2012).

3. 성범죄 피해자 보호

언론자유법은 범죄 피해자의 정보를 다룸에 있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언론자유법 제35조에 따르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범죄 피해자의 존엄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해당 범죄의 구현은 1만 5000 유로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고 밝힌다. 또한, 2000년 9월 19일 개정안은 성범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이미지를 공개할 경우, 1만 5000 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 범죄 피해자의 성격은 세부적으로 나뉜다. 예를 들어, 언론자유법 제39조는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 마찬가지로 1만

5000 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히고 있다.

혐의자 혹은 피해자 모두를 아우르며 범죄 보도 전반에 대한 규제책도 마련되어 있다. 언론자유법 제38조는 법적 절차에 의해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미종결 사건이나 재판 관련 공식 자료를 공개할 경우, 3750 유로의 벌금이 내려진다고 규정한다. 또한, 재판장이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정 공판에서 녹음기기를 사용하거나 사진을 찍는 것과 같은 행위도 엄격하게 금지된다. 만약 이와 같은 정보를 담은 기사를 게재할 경우, 4500 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언론의 범죄 보도와 관련한 프랑스 언론자유법의 주안점은 피해자 인격권 보호와 무죄추정 원칙의 확립이다. 범죄 피해자의 경우, 그 대상을 세분화함으로써 다양한 층위의 피해자들을 법적 테두리 안으로 포함한다. 한편 아직 범죄 혐의가 공식적으로 소명되지 않은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기소 사실 혹은 범죄 혐의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한다.

이 같은 장치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범죄를 다루는 데 있어, 특히 성범죄와 관련한 언론보도는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켰다. 이는 성범죄 피해자의 심각한 인격권 침해뿐만 아니라 법적 판결은 받지 않은 용의자의 인격권에 대해 심각한 침해를 초래하였다.

III. 성범죄 보도에 따른 피해자 기본권 침해 사례 및 프랑스 언론의 성범죄 보도 행태

1. 우트로 사건(Affaire Outreau)

(1) 사건 내용

이 사건은 1997년부터 2000년까지 프랑스 북부의 불로뉴-쉬르-메르(Boulogne-sur-Mer) 인근에 위치한 주민 약 1만 5000명의 소도시 우트로(Outreau)에서 발생한 아동 성범죄(Pédophile)를 일컫는다. 2000년 초 미리안 바다위(Myrian Badaoui)와 티에리 들레이(Thierry Delay)의 네 자녀는 가정 내에서 자신들에게 자행된 성폭행을 폭로하였다. 그들은 부모뿐 아니라 여타의 성인들도 성폭행에 가담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곧 프

랑스 전역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아동 성범죄에 대한 커다란 공분을 갖고 있었는데, 1996년 사건의 배경이 된 벨기에는 물론 국제적으로 큰 논란을 야기했던 뒤트루 사건(Affaire Dutroux)⁵⁾ 때문이었다. 이 사건의 전모가 낱알이 드러나면서 프랑스 사회에서 아동 성범죄는 가장 심각한 범죄로 여겨졌고,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우트로 사건은 프랑스 사회와 언론의 집중적인 주목을 받았다.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서 총 18명이 용의선상에 올라 조사를 받았고, 12명의 성범죄 피해 아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Licourt, 2018). 2004년 범행 주도자로 판단된 티에리 들레이(Thierry Delay)는 징역 20년형, 주 공범자이자 그의 배우자인 미리안 바다위(Myriam Badaoui)는 징역 15년형, 공범으로 드러난 다비드 델플랑크(David Delplanque)와 오렐리 그르농(Aurélie Grenon)은 각각 징역 6년형과 4년형을 선고 받았다(Le Point, 2015).

(2) 우트로 사건을 둘러싼 사법 논란 : 무죄추정의 원칙 훼손

우트로 사건은 당시 사회 분위기와 사건의 잔혹성으로 인해 뜨거운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기본권 침해 논란은 사회적 논란을 넘어 정치권으로까지 파장이 뻗어나갔다.

여기에는 사법적 절차 과정에서 불거진 무죄추정의 원칙 훼손이 가장 중요한 이유로 작용하였다. 실제 이로 인해, 프랑스 의회는 국회의원 30명으로 구성된 청문회를 2006년 1월 10일부터 같은 해 4월 12일까지 3개월 간 진행하였다. 국회가 직접 나선 것에는 수사 선상에 오른 18명의 용의자 중 4명만이 혐의가 인정된 바, 나머지 무혐의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가 주된 쟁점이었다. 청문회 동안 221명이 불려나왔으며 그 내용을 담은 보고서는 1600 페이지를 넘는다. ‘우트로 사건에서 드러난 사법의 역기능 원인과 재발 방지 대안을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La commission d’enquête chargée de rechercher les causes des dysfonctionnements de la justice dans l’affaire dite

5) 마크 뒤트루(Marc Dutroux)는 1995년부터 1996년 사이 벨기에에서 여섯명의 소녀를 성폭행하고 이들 중 4명을 살해한 혐의로 2004년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사망한 피해자 중 2명은 아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의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공범 베르나르 와인스타인(Bernard Weinstein)의 시신도 발견되었다. 또 다른 공범으로 지목된 그의 배우자 미셸 마르탱(Michelle Martin)은 징역 30년형, 미셸 르리에브르(Michel Lelièvre)와 미셸 니올(Michel Nihoul)은 각각 징역 25년형과 5년형을 선고받았다(Thorin, 2019).

d'Outreau et de formuler des propositions pour éviter leur renouvellement)' 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청문회의 목적은 분명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임시 구류(*la détention provisoire*)의 남용이었다. 이는 재판이 개시될 때까지 기소자를 구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와 관련해 아직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자의 신체를 구속하는 것은 명백한 무죄추정의 원칙 훼손이며, 이 과정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변호권(*Le droit de la défense*)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었다(Licourt, 2018). 또한, 2004년 비공개로 진행되었던 피해 아동들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의심됨에 따라 해당 사건은 파리 중죄재판소(*La Cour d'assises de Paris*)까지 올라갔다. 이 때, 고소인들과 증인들의 일부 증언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났고, 더불어 정신감정인과 담당판사의 무성의로 인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오승규, 2007). 실제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13명의 용의자 중에는 1년에서, 길게는 3년 넘게 임시 구류에 처해진 경우도 있었다(Orsini, 2015). 이에 자크 시라크(*Jacques Chirac*)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 “전례 없는 사법적 재앙으로 남을 사건 앞에서 여러분께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Je tiens à vous présenter regrets et excuses devant ce qui restera comme un désastre judiciaire sans précédent*)”라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무죄 판결을 받는 13명에게 전했다고 엘리제궁은 2005년 11월 5일 밝혔다(*Le Monde*, 2005).

게다가 2002년 6월 9일 혐의를 받고 임시 구류 중이던 32세의 프랑수아 무르망(*François Mourmand*)이 사망한 채로 발견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는 생-오메르(*Sain-Omer*) 법정에서 열릴 해당 사건 관련 첫 재판이 진행되기 2년 전 사망했다. 사인은 약물과다 복용으로 알려졌지만, 자살 여부 혹은 약물 오용 등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Aubenas, 2005). 이에 따라,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던 18명 중 13명은 무혐의로 판단되었으며 4명은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사망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3) 우트로 사건을 둘러싼 언론보도의 문제 : 피해자 기본권 침해 등

프랑스 전역을 뒤흔든 사건인 만큼 모든 언론매체들이 이 사건에 매달렸다. 하지만, 이 사건은 범죄 관련 자료를 다루는 언론의 행태에 대한 불신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자

리잡았다. 언론들은 혐의자를 지목하거나, 형사 재판 과정의 정보를 밝히는 데 더욱 열을 올리며 인격권 침해를 자행했기 때문이다(Dupeux, 2012). 청문회는 당시 언론보도 행태를 중요한 한 축으로 다루었고, 프랑스 주요 언론의 관계자들과 언론인들이 청문회에 불려나왔다. 그들은 당시 해당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 각 언론매체에서 영향력을 지닌 자들이었으며, <리베라시옹(Libération)>, <르 파리지앙(Le Parisien)>, <르 피가로(Le Figaro)>, <프랑스 3(France 3)> 등과 같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매체들도 포함되었다(Raizon, 2006).

언론이 이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 사회적 비판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 인격권 침해와 무죄추정의 원칙 훼손이었다. 청문회 보고서는 당시 사건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언론보도 행태의 문제를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① 예심 중 언론으로서의 엄격성과 신중함 결핍(La manque de prudence et de rigueur des médias pendant l'instruction) ② 언론이 소송 과정에 끼친 영향(L'influence des médias sur la procédure) ③ 생-오메르 중죄법원 재판 중 나타난 언론의 급격한 방향 전환(Le retournement des médias au procès de Saint-Omer)이 그것이다.

1) 언론에 의한 무죄추정의 원칙 훼손

보고서는 당시 문제가 되었던 언론보도 사례들을 상세히 되짚으며, 이로 인해 촉발된 무죄추정 원칙의 훼손을 설명한다. 가장 먼저 언급된 언론보도는 <라 부아 뒤 노르(La Voix du Nord)>가 2001년 11월 17일 “매춘업에 몰린 24명의 아이들(24 enfants prostitués)”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기사다. 이 기사가 문제가 된 것은 구류된 6명의 혐의자들의 신원을 알 수 있는 그들의 이름과 직업을 같이 공개했기 때문이다. 이 매체는 본인 스스로 강조하였던 언론 윤리를 저버리는 모습도 보였다. 이보다 앞선 2001년 4월 7일 “아동 성범죄 : 수감된 한 부부(Pédophilie : un couple écroué)” 기사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무죄추정의 원칙 법률에 따라 피해자와 현재 투옥된 혐의자들에 대한 신원을 밝힐 수 없다고 강조했던 모습과는 상반되었기 때문이다(Galinier & Pereira, 2006).

당시 <라 부아 뒤 노르>의 편집장인 장-미셸 브르토니에(Jean-Michel Bretonnier)는 국회 청문회에서 “피해 가족의 외부인과 관련해서 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해치는 것을 금하는 것이지, 이름 공개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Pour les personnes étrangères

aux familles des victimes, la loi ne nous interdit pas de publier les noms, mais de porter atteinte à la présomption d'innocence)"라고 말하였다. 또한, "블로뉴의 모든 사람들은 이미 한 경비원과 택시기사가 연루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직업군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자신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연락해왔다. 우리의 의도는 루머 확산을 막는 것이었다(Tout le monde, à Boulogne, sait déjà qu'un huissier et un chauffeur de taxi sont en cause, et des personnes exerçant ces professions nous contactent pour faire savoir que ce ne sont pas elles ; notre intention est alors de circonscrire la rumeur)"라며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 주장에 대해 인정을 하면서도, 입건자를 익명으로 처리하는 것은 필수적이었다고 증언한 방송채널 <프랑스 3>의 지역 매체인 <에프에흐3-노르-빠-드-갈레(FR3-Nord-Pas-de-Calais)>의 에르베 아르뉘(Hervé Arduin)의 사례를 들며 <라 부아 뒤 노르>의 보도에 대한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덧붙여, 일부 매체에서 혐의자의 이름이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혐의자에 대한 익명 보장은 다른 매체에서도 그 중요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하였다. 실제 <리베라시옹>, <르 피가로>, <르 파리지앵>, <르 누벨 옵세르바퇴르> 등과 같은 주요 매체들은 2002년 1월 중순부터 혐의자들의 이름을 기사에 담기 시작했다.

이 뿐만 아니라, 일부 보도는 혐의자의 이미지를 대중에 공개하면서 심각한 인격권의 침해를 초래하였다. 언론자유법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갑을 차고 있거나 임시 구류 중인 모습 및 그 사람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이미지를 공개할 경우, 1만 5,000 유로의 벌금이 내려진다고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은 이를 엄격하게 지키지 않았다. 이는 해당인의 가족이나 지인의 강한 반발을 일으켰다. 임시 구류 중 사망한 프랑수와 무르명의 여형제인 리디아 카쟁-무르명(Lydia Cazin-Mourmand)은 청문회에서 "텔레비전에 그의 사진이 나왔을 때, 나는 기자들에게 전화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만두지 않았다(Quand la télé a montré sa photo, j'ai téléphoné moi-même aux journalistes pour leur dire d'arrêter, mais ils n'ont pas arrêté)"고 증언하였다.

같은 해 11월 21일, <르 피가로>는 '아동 성범죄 지하조직(Réseau pédophile)'의 존재 가능성을 암시하는 추측성 기사를 냈고, 이어 <르 뿌앙(Le Point)> 역시 이와 같

은 내용의 보도를 냈다(Galinier & Pereira, 2006). 이 같은 추측성 보도는 언론에 의한 혐의자들의 신원 정보 공개와 더불어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대하게 침해하였다. 이들은 가정적 혹은 추측성 어법을 구사하여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범죄의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독자들에게는 사실상 이 같은 범죄의 존재를 확신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청문 보고서 역시 사건을 다루는 언론의 신중함이 결핍되었다고 강조하였다.

2) 언론에 의한 피해자 인격권 침해

우트로 사건을 다룸에 있어 언론들은 피해자 인격권에 대한 세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도 보였다. 또한, 피해 아동들의 신원을 추측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침해할 여지를 제공하였으며, 더 직접적으로 피해 아동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언론보도 행태도 잇달았다.

필자는 이와 관련해 먼저 언론자유법 제39조에 따라 성범죄 피해자의 이미지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 1만 5000 유로의 벌금이 내려진다는 것을 먼저 강조한다. 하지만 이 법적 제한이 일부 언론들에 의해 지켜지지 않았으며, 2004년 5월 3일 <렉스프레스(L'express)>의 기사를 언급하고자 한다. 이 기사는 피해 아동들이자 주범 들레이(Delay)의 자녀 중 2명의 이름 일부를 공개했으며, <르 몽드> 역시 2002년 1월 14일 “4명의 소년들은 그들의 아버지인 티에리 데(Thierry D)가 그의 친구 뮌리앙 베(Myriam B)와 함께 자신들을 성폭행했다고 알렸다(les quatre garçons ont vite indiqué que leur père, Thierry D, les avait violées avec son amie, Myriam B)”고 보도하며 피해 아동 4명의 성(姓)을 공개하였다. 이후 보도에서 <르 몽드>는 뮌리앙 들레이(Myriam Delay)가 매춘과 성폭행을 당한 네 아이들의 어머니라고 밝혔으며, 티에리 들레이(Thierry Delay)가 그의 배우자라고 밝혔다. <리베라시옹> 역시 2003년 8월 12일 기사에서 “데씨 가족의 아이들(enfants de la famille D)”라며 피해 아동 3명의 성(姓)을 드러냈다. 비록 언론보도에서 그들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이를 추정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음을 보고서는 지적하였다. 이보다 더욱 심각하게는 사실을 정제하지 않고 폭로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텍티브(Détective)>는 피해 아동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Galinier & Pereira, 2006).

또한, 청문 보고서는 사건이 벌어졌던 지역에 팽배한 경제적 빈곤과 높은 실업률 등을 강조하며, 마치 이 지역에서는 이 같은 비극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묘사하는 보도 행태에 대한 문제도 지적하였다. 이는 지역사회에 크나큰 상처를 주는 것은 물론이며, 이에 대해 신문과 방송 언론 매체들이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감정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보도하는 데 더욱 몰두했다고 청문 보고서는 평가하였다.

(4) 후속조치

청문 보고서는 당시 언론보도 행태에서 중대한 문제가 드러난 만큼, 큰 틀에서 두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현행법적 수단의 개선(Améliorer les voies de droit existantes)과 언론들의 윤리규정 제정 추진(Inciter les médias à élaborer un code de déontologie)이 그것이다.

1) 현행법적 수단의 개선

이 부분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된다. 첫 번째로 사소(私訴)권 행사 촉진(Faciliter l'exercice de l'action civile)과 두 번째로 방송 부문에서 반론게재 청구권 개혁(Réformer le droit de réponse dans le secteur audiovisuel)이 그것이다.

첫 번째 내용과 관련하여, 청문 보고서는 파기원이 1994년 6월 22일 “민사재판소에서 공소(公訴)와 별도로 행해진 소송의 경우, 언론자유법 제55조의 적용을 가로막는 어떤 입법적 규정은 없다(Aucune disposition législative n'écarte l'application de l'article 55 de la loi de 1881 dans le cas d'une action exercée séparément de l'action publique devant la juridiction civile)”고 판단한 부분을 언급한다. 언론자유법 제55조는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사실 증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환장에 적시된 내용, 말하자면 사실관계와 참고 문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여 보도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해야 한다. 즉, 파기원의 결정은 형사재판이 아닌 민사재판의 경우, 언론은 언론자유법 제55조에 따라 보도의 사실 내용을 증명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문 보고서는 고소의 적격성을 규정하고 있는 언론자유법 제53조와 관련하여, 이는 민사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1997년 2월 19일 파기원의 결정을 같이 인용한다. 이에 따르면, 언론의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민사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법적 토대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반론권과 관련하여 보고서는 인쇄매체와 방송매체 간의 차이를 언급한다. 이런 차이는 각 언론매체를 규정하는 법이 다른 것에서 기인한다. 인쇄매체의 경우, 언론자유법을 따른다. 언론자유법에 따르면, 인쇄매체는 반론권 행사와 관련하여 형사상 책임이 따르지 않지만, 이를 거부할 시 3750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면, 방송매체는 1982년 7월 28일 방송법(La loi du 29 juillet 1982 sur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을 따른다. 방송법에 따르면, 중상과 모욕 등에 의해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반론권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방송법은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의 벌금이 부과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방송매체와 인쇄매체 모두 언론의 범주 안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를 규제하고 제재하는 법적 장치는 상이하다. 이는 물론 각각 매체의 고유한 특성에 의거한 것이지만, 청문 보고서는 매체의 특성과 관계 없는 반론권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한다.

2) 언론들의 윤리규정 제정 추진

보고서는 프랑스에서 언론 윤리와 관련해 제도적 기능이 미흡하다고 진단한다. 물론 정보 확인과 사전조사, 신중함 등은 언론인들이 지녀야 할 중요한 직업윤리이자 정신으로 여겨진다. 또한, 1918년 전국언론인노동조합(SNJ, Syndicat National des Journalistes)의 ‘언론인 윤리강령(Charte d'éthique professionnelle des journalistes)’ 등 자율적인 규제도 존재하지만, 이는 선언적 의미가 강할 뿐 아니라 일반적인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한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언론인의 직업윤리와 관련하여 핵심적으로 8가지 내용을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① 보도에 앞서 정보의 정확성 확인(Vérifier l'exactitude des informations, avant leur publication) ② 모든 부정확한 정보에 대한 즉각적인 수정 및 이를 원본의 기존 위치에 반영할 것(Rectifier toute information inexacte, sans délai et en accordant à la rectification la même place qu'à l'information initiale) ③ 보도에 있어 신중함과 절도(節度)를 보일 것(Faire preuve de prudence et de mesure dans l'expression) ④ 대심(對審)의 원칙에 따라, 다양한 층위의 의견을 청취할 것

(Recueillir des pints de vue émanant de sources différentes, selon le principe du contradictoire) ⑤ 신원을 공개함에 있어 분별력을 발휘할 것(Divulguer l'identité des personnes avec discernement) ⑥ 사생활과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할 것(Respecter la dignité humaine et la vie privée) ⑦ 무죄추정의 원칙을 준수할 것(Respecter la présomption d'innocence) ⑧ 반론권 행사를 용이하게 할 것(Faciliter l'exercice du droit de réponse).

우트로 사건에 대한 국회 청문회는 사법적 수단의 남용과 그에 따른 기본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그에 따라, 청문 보고서는 임시 구류 남용의 제한 등과 같은 사법권 행사와 관련하여 다양한 보완책을 제시한다. 이와 비교하여, 비록 청문회가 당시 언론의 행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지만, 그 정도는 현행법 준수와 언론 윤리 강화와 같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 언론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시도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더 나아가 언론 자유를 훼손할 수 있는 법제의 제정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프랑스의 법체계(박진우, 2007)와 인권선언에 기원하여 역사적으로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언론의 자유 수준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청문 보고서는 제한적으로나마 입법권자 혹은 시민들의 대표인 국회에 의해 언론의 보도 행태와 관련한 문제제기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 리디아 사건(Affaire Lydia)

(1) 사건 내용

이 사건은 2004년 리디아 구아르도(Lydia Gouardo)가 자신의 아버지인 레이몽 구아르도(Raymond Gouardo)에 의해 28년 간 지속되었던 성폭행을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피의자이자 피해자의 아버지인 레이몽은 1999년 사망했는데, 성폭행은 그때까지도 지속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은 모(Meaux) 인근 작은 마을의 오래된 농가에서 지냈는데, 장기간의 성폭력으로 그녀는 총 6명의 아이를 낳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엄밀히 말하자면,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의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다만, 르 칸(2016)은 이 사건과 프리츨 사건(Affaire Fritzl)을 연관시켜 리디아 사건이 불거진 지 1년이나 지난 후에 프랑스 언론의 급격한 관심

을 받게 된 맥락을 분석한다. 그런 점에서 이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성범죄와 관련한 프랑스 언론의 뉴스가치 판단의 척도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언론 보도 행태를 중점적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프랑스 언론에 있어 단순한 사실 전달은 최우선의 가치가 아니며, 각각의 범죄 또는 성범죄가 지닌 특성에 따라 더 큰 뉴스 가치를 부여받고 또 가공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뉴스 가치 판단은 필연적으로 특정 사실의 부각과 그에 따른 사건 맥락의 훼손 또는 선정적 보도 등 피해자 인격권 침해와 직결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프리츨 사건은 2008년 4월 말 오스트리아에서 드러난 가정 내 성범죄로 피해자인 엘리자베스 프리츨(Elisabeth Fritzl)은 18살 때부터 약 23년 간 집 지하실에 감금되어 아버지인 조세프 프리츨(Josef Fritzl)로부터 지속적 성폭력을 당하였다. 그 결과, 그녀는 총 7명의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아이 중 2명은 출생 후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해 사망했고, 그 사체는 불태워 유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범죄행위는 2004년 19세였던 그녀의 첫째 딸이 응급상태로 병원 실려 가면서 드러났다. 의료진들이 병의 원인을 진단하기 위해 그녀의 어머니 엘리자베스와 연락 하길 원했고, 이에 피의자이자 그녀의 아버지인 조세프는 이를 수락했다. 그러고서야 감금에서 벗어난 엘리자베스는 병원 의료진에 그 동안 있었던 모든 범죄 행위를 알렸다. 그 때 그녀의 나이는 42세였고, 6세와 18세의 다른 아이들도 그제서야 지하실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2) 사건에 대한 프랑스 언론의 태도

리디아 사건의 최초 언론보도는 2007년 2월 2일 있었던 리디아의 의붓어머니 루시엔느(Lucienne)에 대한 공판 직후 나왔다. 당시 재판부는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재판을 지켜보던 지역 주간지 <라 마른(La Marne)>의 한 법조기자 역시 방청석에서 나가야 했다. 이 같은 재판 진행에 의문을 품은 해당 기자는 해당 사건을 대중에 밝히면서 재판부의 결정을 비판하는 기사를 썼는데, 피해자는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공개 판결이 의무가 아니었고, 검찰 측 요구에 따라 그렇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기자는 “아버지가 그녀에게 6명의 아이들을 임신시키다. 이상한 비공개. 가정의 비극(Son père lui fait six enfants. Étrange huis clos. Drame familial)”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하며, 재판 과정의 비공개 처분과 함께 이 같은 비극을 막지 못한 사법체계에 비판을 가했다.

초기에 이 사건은 프랑스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2007년 3월 10일 프랑스 언론통신사인 <아에프페(AFP)>에서 이 사건에 대한 첫 기사를 각 언론사에 배포하였지만, 미디 피레네(Midi-Pyrénées)의 지역지인 <라 데페쉬 뒤 미디(La Dépêche du Midi)>와 코트도르(Côte-d'Or)의 지역지인 <르 비앙 뤼블리크(Le Bien public)> 두 군데에서만 이를 받아 보도하였다. 그 외에 전국 일간지로서는 <리베라시옹>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무관심을 비난하는 논조의 기사를 실은 바 있다.

저자는 당시 이 사건이 프랑스 언론계에서 뉴스가치를 평가 받지 못한 몇 가지 이유를 분석한다. ① 특정 지역에 국한된 낮은 정보 가치 ② 언론의 적은 영향력 ③ 사건의 시의성 등이 그 이유이다.

먼저 첫 번째와 관련하여 이 사건은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남에 따라, 전국적 영향력을 지닌 언론매체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우트로 사건 직후, 경제·사회적으로 낙후한 지방의 소도시에서 일어나는 이 같은 사건은 그 자체로서는 큰 뉴스가치를 지니지 못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는 언젠든 일어날 법한 사건으로 인식되었으며, 그런 이유에서 별도의 뉴스 꼭지를 할당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와 관련해서는 초기 몇 개월 간 이 사건을 다룬 매체는 첫 기사를 실었던 지역지가 유일하였다. 문제는 해당 매체의 파급력이 낮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받아쓰는 매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 기사들은 해당 사건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린 기자에 의해서만 작성되었다. 다시 말해, 해당 매체 안에서도 이 사건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한 것이다.

사건의 시의성과 관련하여, 해당 사건은 피의자가 사망하고 몇 년이 지나서야 불거졌다. 그로 인해 사실상 이미 '종결'된 사건으로 여겨졌다. 또한, 피해자인 리디아가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수십 년 간 폭력에 시달렸지만, 사건이 드러난 시점에는 이미 성인이었다. 저자는 이 사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언론의 관심도를 설명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이 맥락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구심이 일어나기도 했다. 먼저 주범으로 지목된 레이몽이 사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거나 쌍방의 의견을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⁶⁾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사망한 지 몇 년이나 지나서야 사건의 존재를 폭로하면서 리디아의 진술을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할 지 모호했다.

큰 틀에서 리디아 사건과 프리츨 사건은 상당 부분 일치한다. 모두 아버지에 의한 성범죄이며 수십 년에 걸쳐 지속되었고, 이로 인해 여러 명의 아이들을 출산했다. 그렇기 때문에 리디아 사건은 ‘프랑스의 프리츨 사건’이라 불리기도 했다. 이처럼 사건 성격상 크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지만, 프랑스가 아닌 오스트리아에서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프랑스 언론으로부터 지대한 관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리디아 사건을 재평가하도록 이끈 동력이 되었다. 이 점에서 프랑스 언론이 프리츨 사건에 커다란 관심을 보인 맥락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프랑스 언론계가 프리츨 사건에 큰 뉴스가치를 부여한 이유로 ‘해당 사건의 특이성’을 꼽는다. 무엇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언론계가 주목한 것은 장기간의 ‘감금’이다. 피해자가 20년 넘게 지하실에 갇힌 상태에서 범행이 자행되었다는 점이 크게 부각되었다. 언론매체는 이 부분을 강조하며 프리츨 사건을 여타의 아동 성범죄 또는 친족 성범죄(Inceste)와 구별되는 것으로 내세운다.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은 일반적이지 않은 독자적인 맥락을 품고 있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높은 뉴스가치를 부여받았다.

장기간의 감금은 사건의 성격을 규정할 뿐 아니라 사건의 확장성을 가져왔다. 수십 년에 걸쳐 감금된 채 성폭행을 당하고 그에 따라 여러 명의 자녀까지 출산했는데도, 이웃은 물론 그 어떤 제도적 기관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즉, 오랜 시간 비밀스럽게 사건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현행 사회 제도의 사각지대가 드러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특정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 사회적 이슈로 급격히 떠오를 수 있었다. 이 점에서 리디아 사건과 프리츨 사건이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리디아 사건이 일어나던 지역에서는 암묵적으로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주민들은 물론 행정당국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 물론 그 자체로도 사회문제가 되고 뉴스가치를 지닌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당시 프랑스 언론은 우트로 사건으로 인해 낙후한 지방 소도시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사건들은 더 이상 새롭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더 나아가, 그 지역 주민과 행정체계 전체가 암묵적 묵인자가 되면서 오히려 그 지역의 특수한 사건으로 남은 것이다.

6) 2007년 2월 12일 재판부는 의붓어머니의 공범 혐의를 인정하였으며, 같은 해 4월 12일에는 징역 3개월 형과 벌금 1만 5000 유로를 선고하였다.

또 다른 특이성은 피해자의 성격과 연관된다. 주목해야 할 것은 프리츨 사건의 피해자인 엘리자베스는 본인이 처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생명이 위급한 자신의 자녀를 구하기 위한 이타적(Altruiste)인 이유로 사건을 폭로했다는 점이다. 또한 그녀가 지하실에서 벗어난 직후 해당 사건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더욱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하여 가해자인 조세프가 현존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데, 명확한 비난의 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사법당국은 즉시 사건에 개입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사건의 실체가 명료하게 드러났다.

(3) '진실한 피해자'와 '모호한 피해자'

이 지점에서 필자는 프랑스 언론이 성범죄 피해자를 규정하는 기준들을 도식화하였다. '진실한 피해자(Vraie victime)'과 '모호한 피해자(Fausse victime)'으로 나누어 언론에서 성범죄 피해자를 규정하는 맥락을 설명하고자 한다.

〈표 1〉 진실한 피해자와 모호한 피해자

진실한 피해자	모호한 피해자
현재 범행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끝내기 위해 범행 사실을 폭로. 이 같은 고발은 사전에 계획되지 않음	범죄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범죄가 끝난 이후, 이 같은 사실을 폭로. 이는 사전에 계획되어 있음
타인에 의해 범죄 피해자로 인정받음	피해자 스스로 범죄 피해자로 규정하며 이를 인정받 고자 함
피해자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보호를 받음	본인을 범죄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공격함
여전히 복종 상태에 있음	복종 상태에서 벗어남
타인들이 피해자를 위해 비난에 가세함. 제도적 기관 역시 공개적인 발언에 나섬	피해자 혼자 비난을 가함. 제도적 기관에 반하는 개인 적인 발언에 나섬
그녀가 속한 사회에서 범죄로 여겨지는 것의 피해자로 인정됨	그녀가 속한 사회에서 일반적이라고 여겨지는 것의 피해자라고 자칭함
가해자는 살아있고, 지명될 수 있으며, 일반적이지 않음	가해자는 일반적인 사람이며 더 이상 혹은 아예 식 별되지 않음
피해자가 겪은 범죄 사실이 성범죄에만 국한되지 않음	범죄 사실이 성범죄에만 국한됨
피해자 본인이 나서서 발언하지 않으며 발언하더라도 빈도가 매우 적음. 외부에 노출되지 않음	많은 발언을 할 뿐 아니라 외부 노출도 많음
가해자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인이 처한 상황과 관련하여 어떤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음	본인이 처한 상황과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함
여전히 피해자로 남아 있으며, 자신을 피해자로 내 몬 사회질서라도 이를 존중함	과거에 피해자였으며, 자신을 피해자로 내몬 사회질 서를 비난함

출처: Léonore Le Caisne (2016). Quand dire, c'est faire taire

도식에 비추어보면, 리디아 사건의 피해자인 리디아와 프리츨 사건의 피해자인 엘리자베스는 언론에 의해 서로 다른 지위를 얻는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범죄 사실 폭로의 동기가 다르며, 사건의 전개 역시 상이하다. 프리츨 사건의 경우, 엘리자베스의 폭로 이후 경찰이 즉각 개입하였으며, 조세프를 가해자로 지목하고 그의 프로파일은 물론 해당 사건 내용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공개되었다. 또한, 이 사건이 수십 년 간 비밀리에 지속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제도적 기관에 대한 비판이 가해졌지만, 한편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경찰은 이 사건의 외부인으로서 위치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본인의 정당성과 권위를 지킬 수 있었다.

엘리자베스 스스로 직접 언론에 노출된 적이 없다는 것도 중요하다. 그녀가 직접 나섰던 것은 본인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도움을 줬던 주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편지 한 통이 유일하였다. 그 어떤 인터뷰에도 나서지 않았으며, 그녀 본인은 물론 아이들의 사진이 공개된 적도 없었다. 이 같은 익명성은 사건의 무게를 더하는 것은 물론, 그녀의 피해자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런 모든 맥락들을 통해 당시 모든 언론은 엘리자베스를 반인륜적 사건의 ‘진실한 피해자’로 받아들였다.

반면 리디아 사건의 경우, 이 사건은 어떤 제도적 기관의 개입 없이 작은 지역지에서만 다뤄졌다. 또한, 피해자인 리디아가 스스로 앞장서 사건 폭로에 나섰다. 그녀는 이 같은 범죄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묵인했던 지역 공동체와 제도적 기관들을 비난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더욱이 가해자로 지목한 레이몽이 이미 사망한 지 수 년이 지나서야 행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그녀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녀의 적극성과 행동 시점 등은 오히려 그녀의 피해자 지위에 의문을 가하는 역작용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4) 언론의 사건 재조명

위에서 언급한 사건의 맥락과 특성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리디아 사건은 ‘프랑스판 프리츨 사건’으로 명명되면서 새롭게 프랑스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제 이 사건은 아동 성범죄, 특히 근친에 의한 아동 성범죄의 대표적 사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리디아 사건은 단순히 프리츨 사건과 유사한 국내 사건으로서 부각된 것은 아니다. 프리츨 사건은 하나의 언론 프레임을 제공하고 새로운 뉴스가치가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앞서 리디아 사건이 언론 보도화되었을 때는 제도적 허점, 사건에 대한 무관심, 혹은 합법적 아버지 - 유전적 아버지가 아닌 - 에 의해 장기간 이어진 성적 학대가 주목받았다. 하지만, 프리츨 사건의 특징에 따라 리디아 사건은 새롭게 조명받았다. 이로 인해, 리디아 사건은 있음직한 유형의 범죄에서 독특한 특성의 범죄로 그려졌다.

가장 먼저 적용된 프레임은 ‘감금’이었다. 물론 지역 주민들은 암묵적으로 리디아에게 가해지는 성범죄를 인지하고 있던 데다, 그녀가 그의 아버지와 함께 있는 모습을 종종 보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장기간 ‘감금’ 프레임으로 엮는 것은 사건의 진위성을 의심하게 하는 위협을 지니고 있었다. 그럼에도 오랜 기간 한 공간에서 이뤄진 성범죄라는 점에서 언론들은 프리츨 사건과 리디아 사건을 연결하였고, 이는 프랑스의 지방 소도시에서 있음직한 사건이 아닌 것으로 뉴스가치를 부여하였다.

이어 근친상간, 제도적 기관의 실패, 광범위한 무관심 같은 내용들이 새롭게 주목받았다. 리디아는 일반적인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다양한 맥락이 뒤얽힌 반인륜적이고 비극적 사건의 주인공으로 그려졌다. 다양한 언론에서 그녀를 초대하여 인터뷰를 진행했고, 그녀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반복해서 폭로하고 지역 공동체의 무관심에 가차 없는 비난을 가하였다. 수많은 기자들과 방송 카메라는 사건의 배경이 된 지역으로 뛰어 들어 그들의 침묵에 대해 파헤쳤다. 언론의 주요 헤드라인은 “한 도시의 침묵” 같은 제목들로 장식되었다.

각 사회의 특성에 따라 사건이 지닌 뉴스가치는 판이하게 다를 수 밖에 없다. 또한, 다양한 사실관계에서 특정한 맥락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언론 고유의 역할이며 매우 중요한 작업이기도 하다. 그 과정에서 주목받지 못한 사건들이 새롭게 조명받으며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기도 한다.

유념해야 할 것은 언론 보도화 과정에 있어, 피해자가 호소하는 사건의 본질이 흐려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리디아 사건이 새롭게 부각될 당시, 프랑스 언론은 프리츨 사건과 연결하여 감금 프레임을 활용하였다. 이는 언론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뉴스 가치였을지 모르나, 이에 대한 진위 여부, 더 나아가 사건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낼 위험이 있었다. 당시 변호인 역시, 이 같은 프레임보다는 행정당국의 무능과 지역 공동체의 무관심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3. 도미니크 스트로스-칸(Dominique Strauss-Kahn) 사건

도미니크 스트로스-칸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전 총재로, 2011년 5월 14일 미국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소피텔(Sofitel) 호텔에 투숙하면서 객실 담당 호텔 직원인 나피사투 디알로(Nafissatou Diallo)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을 프랑스에서는 도미니크 스트로스-칸의 이니셜을 따 DSK 사건이라 부른다. 이 글에서는 편의상 앞으로 그를 칭할 때는 스트로스-칸이라 하며, 해당 사건을 DSK 사건이라 부르겠다.

이 사건이 프랑스 언론의 성범죄 보도 행태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것은 이 사건을 기점으로 사생활 보호를 명목으로 지켜져 왔던, 프랑스 남성 정치인들의 성추문 보도 자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또한, 이 같은 언론계의 암묵적 침묵으로 인해 피해자의 인격권에 대한 지대한 훼손이 일어나기도 했다.

(1) 사건전개

사건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2011년 5월 14일 스트로스-칸이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성폭행 미수 혐의로 체포되었고, 이를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 등 미국 언론이 긴급 보도하면서 알려졌다(Le Monde, 2011 : Stainville, 2012). 당시 디알로는 사건이 불거진 직후 이 사실을 호텔 관계자에 알렸고, 신고를 접수받은 미국 사법당국은 그가 파리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체포했다.

이어 성폭행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와 재판이 시작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일어났다. 스트로스-칸 역시 성적 행위는 인정했지만,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더군다나 <뉴욕 타임스>는 2011년 6월 30일 디알로가 스트로스-칸과 엮이던 날, 400 파운드의 마리화나를 소지한 혐의로 체포된 한 남성과 통화하며 스트로스-칸을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할 방안을 논의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며 그녀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Dwyer, Rashbaum & Eligon, 2011). 사건이 점차 스트로스-칸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자, 디알로는 오랜 침묵을 깨고 그 모습을 드러냈다. 2011년 7월 25일 그녀는 주간지 <뉴스위크(Newsweek)>와 미국 방송채널 <ABC>를 통해 자신을 향한 공격과 사실 왜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녀의 변호인 측도 이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물을 거라고 공표하였다.

그러던 와중, 프랑스 언론인이자 작가인 트리스탄 바농(Tristane Banon)이 2003년 스트로스-칸의 자신에 대한 성폭행 시도와 관련하여 그를 고소했다고 2011년 7월 4일 밝혔다.⁷⁾ 미국에서 불거진 스트로스-칸의 성폭행 혐의 형사재판은 일관성 없는 디알로의 진술로 인해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하지만, 앞서 같은 해 8월 8일 디알로는 스트로스-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Le Monde, 2011). 민사재판 역시 2012년 12월 10일 양측이 비밀 보장을 전제로 6백만 달러로 추정되는 합의금에 동의함에 따라 끝을 맺었다(Politi, 2012).

(2) 침묵의 규율이 스트로스-칸을 보호해 왔다(La loi de silence a continué à protéger DSK)

프랑스에서 사생활보호의 법적 근거는 1970년 제정된 민법으로, 민법 제9조는 모든 사람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물론 사생활 보호의 범위에는 정치인은 물론 고위공직자도 포함된다(이성훈, 2014). 이는 대통령은 물론 유력 정치인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대표적인 예로 프랑수아 미테랑(François Mitterrand)에게 혼외자가 있었지만, 언론에서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대통령의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보도하지 않았다. 1994년 11월 주간지인 <파리 마치(Paris Match)>에서 미테랑 대통령과 혼외자인 마자린느 핑조(MAzarine Pingeot)가 같이 식당에서 나오는 사진을 보도하며 이 사실을 대중에게 알렸다. 하지만 다른 언론매체들은 이에 대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이 같은 사생활을 폭로한 해당 매체에 더 큰 비난을 가했다(이성훈, 2014). 이에 대해 <리베라시옹>의 전 편집장인 장-미셸 엘빅(Jean-Michel Helvig)은 “우리가 프랑수아 미테랑의 다른 가족에 대해 다루지 않은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Si on n’a pas enquêté sur l’autre famille de François Mitterrand, c’est parce que cela ne nous paraissait pas important)”라고 말했다(Stainville, 2012). 자크 시라크(Jacques Chirac) 대통령의 불륜 역시 기자들 사이에서 알려졌고, 그의 부인인 베르나데트(Bernadette)가 나중에 출간한 책을 통해 이 사실이 밝혀지기도

7) 프랑스 검찰은 2011년 10월 13일 스트로스-칸의 바농에 대한 ‘성폭력(Agression sexuelle)’ 혐의는 인정하나 ‘강간 미수’ 혐의(Tentative de viol)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성적 폭력에 대한 공소 시효 3년이 지났기 때문에 해당 사건은 재판 없이 종결한다고 결정했다. 바농 변호인 측은 “검찰의 결정이 비록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바농의 주장이 허구가 아니라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첫 승리”라고 밝혔다(Cazi, 2011).

했다. 그럼에도 프랑스 언론들은 이를 다루지 않았다(Clarisse, 2011).

스트로스-칸의 성추문은 정치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는 프랑스 언론계의 계율에 대한 일종의 변곡점이 되었다. 이러한 프랑스 언론의 침묵 계율, 혹은 암묵적 엠바고는 ‘오메르타(Omerta)’라고 불린다. 미테랑과 시라크는 물론 프랑수와 올랑드(François Hollande) 등 심심찮게 일어났던 프랑스 대통령의 불륜 혹은 부정은 그들이 아무리 공인이고 유력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부부 간의 사적인 문제 또는 개인의 사생활이라 여겨질 수 있다. 또한, 정치계와 주류 언론계의 유착 관계 역시 이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견해도 있다. 프랑스 사회학자 에릭 파상(Eric Fassin)은 프랑스 정치계와 언론계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이를 지적한다. 실제 스트로스-칸의 부인인 안느 싱클레어(Anne Sinclair)는 프랑스의 대표 방송 채널인 <TF1> 출신의 저명한 언론인이었다(Clarisse, 2011).

스트로스-칸의 사례는 이와는 다른 맥락을 지닌다. 강압에 의한 성폭행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또한 스트로스-칸의 이 같은 성추문 문제가 지속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언론은 침묵을 유지해왔다. <리베라시옹>의 브뤼셀 특파원이자, 2007년 본인의 블로그를 통해 스트로스-칸의 성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장 카트르메르(Jean Quatremer)는 프랑스 언론계의 온당하지 않은 침묵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012년 출간한 ‘섹스, 거짓말과 미디어(Sexe, mensonges et médias)’이라는 책을 통해 정치인의 성 스캔들과 이에 대한 프랑스 언론의 침묵을 다뤘다. 그는 ‘DSK 사건’ 혹은 ‘쇼피텔 사건’으로 불리는 해당 사건이 프랑스 언론의 암묵적 엠바고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건이 외국, 즉 미국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만약, 이처럼 유력 정치인에 의한 성폭행이 국내, 즉 프랑스에서 일어났다면 소송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이며 정치계와 주류 언론계의 관계에 의해 대중에 알려지지 않았을 거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또한, 스트로스-칸이 성폭행 미수 혐의로 체포됐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사건의 증명과는 별개로 프랑스 언론계는 이를 있음직한 일로 여기며 의심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스트로스-칸의 성적 문제는 이미 프랑스 언론계 내에 파다하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가 처음으로 스트로스-칸의 성적 문제를 공론화하며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대다수의 프랑스 언론들이 그에게 여성을 대함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그가 속한 <리베라시옹>에서도 이 글을 지면 기사로 보도하는 것을 거절했다고 주장한다. 피로스카 나지 사건(Affaire Piroška Nagy)⁸⁾으로 불리는 스트로스-칸의 성추문과 관련해서도, IMF 내부 관계자로부터 제보를 받고 심층취재에 나서려고 했으나, 이 역시 당시 <리베라시옹>의 고위진의 거부로 무산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내용은 미국 언론인 <월 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에 의해 처음으로 대중에 공개되었다.

결국 스트로스-칸의 잇따른 성추문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성적 태도를 지녔고, 언론계가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함으로써 문제를 더 키웠다고 본다. 불거진 문제들이 무혐의 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종결되자 프랑스 언론은 이에 대해 유력 정치인의 사생활에 대한 암묵적 침묵 혹은 언론의 신중함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계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카트르메르는 수차례 의혹과 혐의가 불거졌음에도, 이에 대한 언론의 침묵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던진다.

남성 정치인의 사생활에 대한 프랑스 언론계의 침묵은 피해자의 목소리마저 침묵하게 만들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바농은 2011년 스트로스-칸의 성폭행 미수와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그의 이름을 가리기는 했지만 2007년 2월 해당 사실을 대중에 공개한 바 있다. 그리고 2008년 피로스카 나지 사건이 불거졌지만, 프랑스 언론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스트로스-칸의 성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었던 것은 미국 경찰에 의해 그가 체포되고 수갑을 찬 모습이 전 세계에 알려졌기 때문이다. 앞서 몇 차례의 의혹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수 년 간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하며 강제적인 침묵에 잠겼다. 다시 말해, 프랑스 언론계의 침묵의 계율이 언론뿐만 아니라, 성범죄 피해자들의 호소 역시 침묵케 한 것이다(Stainville, 2012).

8) 헝가리 출신의 경제학자로 IMF의 아프리카 지부 책임자로 있었던 그녀는 스트로스-칸과 부적절한 메일을 주고 받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이를 언론에 알렸다. IMF 내부 조사 결과 둘의 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으며 ‘권력 남용’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녀는 조사 결과에 반발하며 그들의 관계는 조직 권력 관계에 따른 강압에 의한 것이라며 반박했다(Millot, 2011).

IV. 성범죄 보도 관련 프랑스 언론계의 자율 규제와 사회적 규제

앞서 살펴보았듯이, 프랑스에서는 성범죄 보도와 관련하여 인격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는 피해자의 기본권은 물론, 혐의가 있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하여 관련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몇 가지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이는 항상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법의 사각지대 역시 존재한다. 또한, ‘언론의 자유’라는 프랑스 사회의 강력한 지향점은 언론보도에 대한 제도적 개입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상대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지난 해 말 저널리즘윤리중재위원회가 설립되었다는 것은 프랑스 언론계에 있어 일종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물론 여전히 언론계 내의 반발이 존재하고, 이제 막 첫 발을 디었다는 점에서 향후 어떤 실용성을 지닐지는 조금 더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 독립 기구로서 기능하며, 언론 외부에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에서 성범죄 관련 보도는 물론, 전반적인 언론 윤리와 가이드라인은 언론계가 자율적으로 마련해 왔다. 가장 대표적이지 긴 역사를 지닌 것은 1918년 7월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전국언론인노동조합의 ‘언론인 윤리강령’이다. 윤리강령은 언론인이 지켜야 할 직업윤리와 관련하여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언론윤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예를 들어, ‘비판적 시각 견지’, ‘사실 왜곡 혹은 도용 금지’, ‘사기업 혹은 제도적 기관으로부터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말 것’ 등이 담겨 있다. 덧붙여 개인의 존엄성과 무죄추정의 원칙 역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언론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의식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포괄적이면서도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한다. 그런 점에서 특정 분야, 구체적으로 성범죄 보도와 관련하여 세세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지금부터는 성범죄 보도와 관련하여 프랑스 언론계 내에서 어떤 자정 활동이 있었는지, 더 나아가 이에 대한 사회적 움직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1. 프르농 라 윈(Prenons la une)

WHO의 여성 살해(Féminicide)에 대한 정의와 이와 관련한 프랑스 내의 논쟁 등에서 드러나듯이, 프랑스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피해자의 대다수는 사회적 약자, 특히 여성과

아동을 상대로 이뤄진다. 프랑스 인구문제연구소(INED, Institut national d'études démographiques)에서 2016년 11월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앞선 1년 간 5만 2400명의 여성들이 최소 한 번의 강간(Viol) 피해를 입었으며, 남성 피해자는 2700 명에 달했다. 통계적으로 여성 26명 중 1명이 강간을 당하며, 7명 중 1명이 성폭행(Agression sexuelle)에 노출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최소 한 번 이상 강간 피해를 입었거나 성폭행 시도에 노출되었던 피해자 중 약 40%는 15세 미만이었으며, 약 16%는 15-17세 사이의 청소년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프랑스 언론이 성범죄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를 여성단체 혹은 여성기자 단체에서 주도하고 있다.

프르농 라 윈(Prenons la une)은 2014년 처음 모습을 드러낸 여성언론인 단체다. 이들은 남성이 주도하는 프랑스 언론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여성 언론인들의 지위와 권리 향상을 목적으로 모였다. 특히, 이들은 프랑스 언론이 여성을 비가시화하며 대상화한다고 비판한다. 이 단체가 2014년 3월 2일 <리베라시옹>에 발표한 선언문에 따르면, 프랑스 언론이 여성 전문가의 의견을 다루는 비중은 18%에 불과하며, 그 외에 언론이 여성을 다루는 방식은 사건의 피해자이거나 단순한 목격자일 때라고 지적한다. 또한, 언론 편집권과 관련하여 여성 언론인은 비주류로 밀려나고 있다고 강조한다(Prenons la Une, 2014).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 조직은 기본적으로 프랑스 언론계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성차별 또는 남성중심 문화에 이의를 제기하며 등장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은 단순히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 조직은 언론계 내 성추행 피해자를 제도적으로 돕기 위해 2018년 조직의 성격을 사적 단체(Collectif)에서 법인 성격의 협회(Association)로 전환하였다. 기존의 성명을 발표하거나 집회를 기획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프랑스 언론계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적·법적 방안까지 강구하는 것이다.

이 협회의 문제의식이 프랑스 언론계에서 여성을 다루는 방식에서 출발하는 만큼 올바른 성범죄 보도와 관련한 움직임도 이끌어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9년 9월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다루는 언론의 방식에 대해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있다. 이에 따르면, 매해 21만 9000여 명의 여성들이 전·현 배우자에 의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으며, 9만 4000여 명의 여성들이 강간 혹은 강간미수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는 분명한 사회적 현상이자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올바

르게 다를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11가지의 권고사항으로 이뤄져 있다. ① ‘치정 범죄(Crime passionnel)’ 혹은 ‘가정의 비극(Drame familial)’ 같은 표현을 쓰지 말 것 ② 법적 용어의 사용을 우선시 할 것 ③ 상투적이고 암시적인 표현을 피할 것 ④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표현을 쓰지 말 것 ⑤ ‘성희롱(Harcèlement sexuel)’, ‘성폭력(Agression sexuelle)’, ‘강간(Viol)’을 서로 혼동하지 말 것 ⑥ 피해자의 생활방식이나 생김새, 옷차림에 집중하지 말 것 ⑦ 충고 혹은 강의 어투의 보도 행태를 취하지 말 것 ⑧ 피해자의 존엄성과 신원을 보호할 것 ⑨ 성폭행과 배우자에 의한 살해를 사회적 사실로서 다룰 것 ⑩ 강간 피해 혹은 사후적 의료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해 쉽게 표현하지 말 것 ⑪ 여성 피해자 상담 전화인 3919 번호를 표기할 것 등이 그것이다.

[그림 1] 프르농 라 우이 제시한 11가지 성범죄 보도 관련 가이드라인

LE TRAITEMENT MÉDIATIQUE DES VIOLENCES FAITES AUX FEMMES

OUTILS À L'USAGE DES JOURNALISTES

Chaque année, plus de 219 000¹ femmes sont victimes de violences de la part de leur ancien ou actuel conjoint, et 94 000 femmes sont victimes de viols ou tentatives de viols. Les violences faites aux femmes sont un fait de société. L'association Prenons la une a établi quelques recommandations pour permettre un traitement journalistique le plus juste possible.

- 1 Bannir les termes « crime passionnel » ou « drame familial »**, qui minimisent l'acte de l'agresseur en le considérant comme emporté par l'amour et la passion. Si ces termes sont employés par les avocats de la défense ou la police, on emploiera des guillemets et on les présentera comme un argument d'une des deux parties. Privilégier « meurtre conjugal » ou « meurtre par le partenaire intime ».
- 2 Préférer les termes juridiques consacrés** quand un procès est en cours (« plaignante », « partie civile »). En l'absence de plainte (et donc de terme juridique consacré), il est préférable d'utiliser les termes de « victime déclarée » ou d'« accusatrice » plutôt que « victime présumée », qui met en doute la parole de la victime.
- 3 Éviter les clichés et les raccourcis.** Une femme meurt rarement « sous les coups » de son meurtrier. Dans la plupart des cas, une arme est utilisée.
- 4 Écarter les verbes « avouer » et « reconnaître »** lorsque l'on rapporte les déclarations d'une victime, car ils laissent croire à une culpabilité de la victime. À l'expression « elle s'est fait violer », on préférera également le passif « a été violée » ou « a subi un viol ».
- 5 Ne pas confondre « harcèlement sexuel », « agression sexuelle » et « viol ».** Les deux premiers sont des délits. Un viol est un crime défini par le code pénal comme « tout acte de pénétration sexuelle, de quelque nature qu'il soit, commis sur la personne d'autrui ou sur la personne de l'auteur par violence, contrainte, menace ou surprise ». Employer le terme « agression sexuelle » pour décrire un viol le minimise.
- 6 Éviter les précisions sur les vêtements, le physique ou les habitudes de vie** de la victime, qui induisent qu'elle peut être responsable de son agression. Si ces informations qui sont délivrées dans le dossier d'instruction ou par le procureur, il convient d'utiliser des guillemets. Rappelons que le fait que la victime soit en état d'alcoolémie au moment des faits est une circonstance aggravante pour l'agresseur au regard du droit.
- 7 Ne pas donner des conseils ou des leçons** tels que « ne pas sortir le soir » ou « faire preuve de discrétion ». Les femmes ne sont pas responsables des violences qu'elles subissent.
- 8 Protéger l'identité et la dignité de la victime.** Révéler son identité peut la mettre gravement en danger. Les journalistes peuvent intégrer les témoignages de victimes de violences uniquement quand celles-ci ne se trouvent pas dans une situation d'urgence ou sous l'influence de tout type de pressions extérieures.
- 9 Traiter le meurtre conjugal et les violences sexuelles comme un fait de société** et non seulement comme des faits divers. Le terme « féminicide », reconnu par l'Organisation mondiale de la santé et qui désigne le meurtre d'une femme en raison de son genre, porte cette dimension sociale. Il est également pertinent de recontextualiser en rappelant que 219 000 femmes sont victimes chaque année de violences de la part de leur ancien ou actuel conjoint, et que 121 femmes ont été tuées par leur conjoint ou leur ex-conjoint en 2018².
- 10 Ne pas oublier que les mutilations, dont l'excision, sont considérées par les Nations unies** comme une violation des droits des filles et des femmes. Il est recommandé de le rappeler. Lorsqu'on évoque les chirurgies réparatrices des mutilations ou des séquelles liées au viol, éviter l'expression « rendre sa dignité aux femmes », qui comporte un jugement de valeur sur les victimes.
- 11 Intégrer le numéro de téléphone national** de référence pour l'écoute et l'orientation des femmes victimes de toutes violences [3919], dans la mesure du possible.

Prenons la une
Outils actualisés, novembre 2019

1. Enquête « Cadre de vie et sécurité » 2015-2018 / INSEE-ONDRAF
2. Ministère de l'Intérie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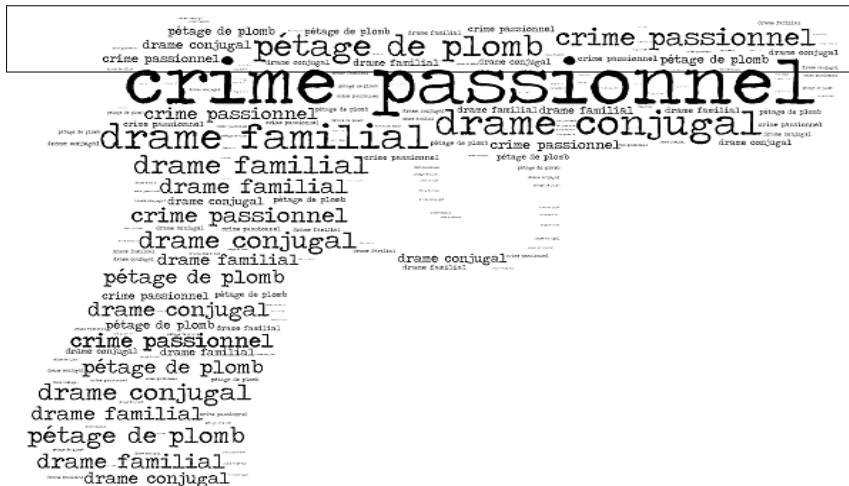
* 사진 출처: <Prenons la une> 인터넷 홈페이지

이는 언론윤리강령처럼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언론인 윤리 구성에서 벗어나, 성범죄 혹은 성차별적 언론보도 행태와 관련하여 더 구체적이고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 같은 조직적 운동과 이에 따른 사회적 논쟁은 실제로 언론계의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렌느(Rennes)를 거점으로 프랑스 서부 지방의 대표적인 지역지인 <웨스트 프랑스(Ouest France)>는 에갈리떼(Égalité, 평등)라는 이름의 조직을 구성하여, 성차별적 표현을 피하고 올바른 성범죄 보도를 위한 조직적 움직임을 취하고 있다.

2. # 레모투(Lesmotstuent) 운동

프르농 라 윈이 여성언론단체로서 프랑스 언론계 내에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면, 앞에서 살펴본 ‘누 투트’는 언론계 외부에서 성범죄 보도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시한다. 누 투트의 적극적인 온라인 활동은 사회관계망을 비롯한 온라인 공간에서 언론의 성범죄 보도와 관련하여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일종의 언론 활동에 대한 외부적 압력으로 볼 수 있는데, 이와 비슷하면서도 유의미한 또 다른 조직적 활동으로 ‘# 레모투(Lesmotstuent)’ 운동을 들 수 있다.

[그림 2] # 레모투의 상징 이미지



* 사진 출처: Les mots tuent 인터넷 홈페이지⁹⁾

9) <https://lesmotstuent.tumblr.com/>

레모투 운동은 온라인 저널리스트이자 여성운동가인 소피 구리옹(Sophie Gourion)이 주도하는 사회운동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언론이 다룸에 있어 사실을 오독하게 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표현을 쓸 경우,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유한다.¹⁰⁾ ‘레 모 튜(Les mots tuent)’를 직역하면 ‘말이 죽인다(The words kill)’라는 뜻으로 성범죄 관련 보도에서 정당하지 않은 표현을 다룰 경우 이를 공개하며 수정을 요구한다.

그녀는 실용성과 효용성을 이유로 텀블러(Tumblr)에 2016년 3월 첫 페이지를 개설했으며, 2019년 2월까지 350여 개의 언론 기사를 다뤘다고 말했다(LNN, 2019). 이 운동은 트위터와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더욱 빠르고 광범위하게 전파되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매체의 반응도 더 즉각적이다. 실제 레모투의 지적을 받은 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려하여 기사를 수정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일종의 해쉬태그 운동이기 때문에, 수많은 단체와 개인들이 이를 전파하고 여론화 작업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레 모 튜’가 지닌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기사 제목이나 보도 내용 중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표현에 대한 고발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언론계 내에서도 이러한 사회조직의 활동이 커다란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한다. <프랑스 컬투르(France Culture)>의 한 기사는 “1, 2년 전만 해도 ‘치정 사건’이나 ‘가정의 비극’ 혹은 사실과 적합하지 않은 표현들을 담은 기사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오늘날의 인쇄매체, 라디오, 방송 등 언론은 여성 살해 또는 배우자에 의한 살해에 대해 점점 더 적합하게 다루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평한다. 물론 아직 현재 진행형이지만,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사회적 움직임으로써 언론계의 자정 노력으로 누 투트와 # 레모투와 같은 사례를 중요하게 다룬다(Moghaddam, 2020).

3. <르 몽드>의 ‘Féminicides’¹¹⁾와 <리베라시옹>의 ‘Meurtres conjugaux, des vies derrière les chiffres’¹²⁾

성범죄 보도와 관련한 프랑스 언론계의 자정 노력으로서 프랑스를 대표하는 매체 중

10) <https://lesmotstuent.tumblr.com/apropos>

11) https://www.lemonde.fr/societe/visuel/2020/06/01/feminicides-mecanique-d-un-crime-annonce_6041403_3224.html

12) <https://www.liberation.fr/apps/2018/02/meurtres-conjugaux-derriere-les-chiffres/>

두 곳인 <르 몽드>와 <리베라시옹>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여성 살해(Féminicide)’와 ‘배우자의 의한 살인, 통계 이면의 삶(Meurtres conjugaux, des vies derrière les chiffres)’ 기획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성범죄 중에서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살인사건을 중심으로 다룬다.

<르 몽드>의 경우, 2019년 3월부터 11명의 기자들이 약 2018년 한 해 동안 있었던 120건의 여성 살해 사건을 심층취재했다. 이를 토대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특히 전·현 배우자에 의한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요인과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삶을 심도있게 다루었다.

<르 몽드>는 이 주제로 심층기획 보도를 계획한 이유를 상세하게 덧붙인다. 먼저 여성 살해를 다루기로 결정한 2019년 3월에도 이 이슈는 공적인 주제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밝힌다. 하지만 2018년 가정 내 살인사건의 15%가 배우자에 의한 여성 살해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이러한 사회적 현상(Phénomène de société)을 다루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 배경에서 이 같은 사회 현상을 가시화하는 것은 필요한 작업이며, 이는 여성 살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데 있어 언론으로서 해야 하는 역할이라는 확신을 가졌다고 덧붙였다(Le Monde, 2020).

<리베라시옹>의 문제의식도 이와 일맥 상통한다. <리베라시옹>은 2017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언론에서 다뤄진 배우자에 의한 여성 살해 사건들을 별도의 웹 페이지로 제공한다. 다만, 이 때 사건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거나 질병 등을 이유로 배우자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일어난 이타적 자살(Suicide altruiste) 등과 같은 사례는 제외한다.

<리베라시옹>의 웹 페이지는 2017년 1월부터 월별로 발생한 사건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이때 특정 사건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을 다룬 언론보도로 넘어가는데, 이 보도는 <리베라시옹> 기사에 국한되지 않는다. 전국지와 지역지에 상관없이 해당 사건을 상세히 기술하는 기사 링크로 바로 연결된다. 그런 점에서 <르 몽드>의 작업과는 구별된다. <르 몽드>가 이 주제와 관련하여 독자적으로 팀을 꾸려 장기간의 기획 기사를 작성했다면, <리베라시옹>은 여성 살해를 다룬 언론보도의 데이터베이스화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리베라시옹>에서 여성권 담당 기자인 비르지니 발레(Virginie Ballet)는 하나의 사회적 현상인 여성 살해를 가시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이 작업의 의미를 강조한다(Moghaddam, 2020).

엄밀히 말해, <르 몽드>와 <리베라시옹>의 작업이 성범죄 보도와 관련하여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마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스스로 밝히듯, 이 같은 작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꾸준히 그리고 상당한 수준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성 살해를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드러내는 데 있다.

이 사례들이 중요한 이유는 여전히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여성 살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관례적으로 이어지던 성차별적인 프랑스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여성 살해와 배우자에 의한 살해를 전면에 내세운 것에서 잘 드러나며, 이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그 필요성을 강조하는 관련 기사에서도 나타난다. 다시 말해, 프랑스 언론의 성범죄 보도와 관련하여 기존과는 다른 방향성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례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르 몽드>가 강조했던, 언론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며 언론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V. 결론

성범죄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사회적 맥락들을 내포하기 때문에, 이를 다루는 언론보도 역시 더 큰 신중함과 세심함이 요구된다. 물론 모든 성범죄가 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다수의 성범죄가 사회적 약자, 특히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때, 이들이 사회적 약자로 규정되는 이유는 해당 사회의 맥락 속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적 지위와 역학관계를 지니기 때문이다. 성범죄에 대한 보도가 야기하는 논쟁이 단순히 범죄 사실에만 근거하지 않으며, 성적 혹은 계급적, 계층적 논점까지 담고 있는 것이다. 이는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띄고 있다.

더불어 언론이 성범죄를 다룸에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하는 이유는 이 같은 거시적 맥락 뿐만 아니라 미시적 차원에서 개인의 존엄성과 인격권까지 직결되기 때문이다. 매일 같이 반복되는 언론보도는 피해자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재생산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2차 및 3차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 또한, 프랑스의 사례에서 살펴봤듯이, 선부른 선정적 보도는 단순한 혐의자 또는 그 지역 공동체에도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씌울 수 있다. 언론의 성범죄 보도가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회라는 거시와 개인이라는 미시가 세밀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성범죄 언론보도와 관련한 프랑스의 사례는 여러모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프랑스에서 언론의 성범죄는 단순하게 정의할 수 없는 사회적 가치와 개인적 가치가 첨예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 프랑스는 프랑스혁명 이후, 프랑스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 여겨지는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자유, 의사소통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공익과 개인의 존엄성,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 등이 충돌한 그물망을 형성하고 있다. 때로는 병존하면서, 때로는 대립하는 이 가치들의 충돌이 성범죄 보도를 둘러싼 프랑스 사회의 논쟁에서 온전히 드러난다.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는 프랑스의 전통에 의해, 이를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와 법적 수단의 개입은 엄격히 제한된다.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한 언론의 자유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사회적 압력과 내부의 움직임이다. 물론 저널리즘윤리중재위원회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제도적 수단의 공고화가 이뤄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기관의 역할과 실효성을 알기 위해서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며, 프랑스 언론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은 사회적 그리고 언론계의 자율적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맥락에서 프랑스 사례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알아보아야 할 것은 성범죄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지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 박진우 (2007). 프랑스의 언론법제 : ‘언론 자유의 위배’에 대한 법적 규정. <언론중재>, 겨울호, 52-64.
- 오승규 (2007). 프랑스 사법개혁에 관한 법제 정비. <외국법제동향>, 46-48.
- 이성훈 (2014). ‘암묵적 엠바고’ 깬 프랑스 언론. <관훈저널>, 224-230.
- 진민정 (2018). 프랑스 언론법과 최근 입법 동향.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 제1·2호>.
- 최지선 (2020). [프랑스] ‘언론 신뢰’ 되찾으려 언론사·언론인·시민 모인다. <신문과방송 2020년 01월호 NO. 589> URL: <https://www.kpf.or.kr/front/news/newsPaperDetail.do>
- Alexis Orsini (2015. 5. 19). Affaire Outreau : que sont devenus les acquittés de 2005 ?. *Le Nouvel Observateur*. Retrieved from <https://www.nouvelobs.com/justice/20150519.OBS9183/affaire-outreau-que-sont-devenus-les-acquittes-de-2005.html>
- Bertrand de Lamy (2012). La constitution et la liberté de la presse, *Les Nouveaux Cahiers du Conseilconstitutionnel*, N° 36. 19-29.
- Caroline Politi (2012. 12. 10). Affaire DSK-Diallo : de l’arrestation à l’accord amiable. *L’Express*. Retrieved from https://www.lexpress.fr/actualite/societe/video-affaire-dsk-diallo-de-l-arrestation-a-l-accord-amiable_1197210.html
- Charlotte Causit Noémie Leclercq (2019. 9. 3). Pourquoi le mot “féminicide” fait-il toujours débat ?. *Franceinfo*. Retrieved from https://www.francetvinfo.fr/societe/feminicides/pourquoi-le-mot-feminicide-fait-il-toujours-debat_3599073.html
- Dominique Raizon (2006. 3. 15). Affaire d’Outreau : Les journalistes face à la commission parlementaire. *RFI*. Retrieved from http://www1.rfi.fr/actu/fr/articles/075/article_42491.asp
- Emeline Cazi (2011. 10. 13). La plainte de Tristane Banon contre Dominique Strauss-Kahn classée sans suite. *Le Monde*. Retrieved from https://www.lemonde.fr/dsk/article/2011/10/13/la-plainte-de-tristane-banon-contre-dsk-pour-tentative-de-viol-classee-sans-suite_1587468_1522571.html
- Florence Aubenas (2005. 12. 6). François Mourmand, un fantôme sur les ruines d’Outreau. *Libération*. Retrieved from <https://www.liberation.fr/societe/>

- 2005/12/06/francois-mourmand-un-fantome-sur-les-ruines-d-outreau_540827
- Fiona Moghaddam (2016. 3. 5). Dans les médias, une (r)évolution du langage sur les violences sexistes et sexuelles. *France Culture*. Retrieved from <https://www.franceculture.fr/emissions/le-reportage-de-la-redaction/dans-les-medias-une-revolution-du-langage-sur-les-violences-sexistes-et-sexuelles>
- INED (2016). Enquête cirage : viols et agressions sexuelles en France - Premiers résultats. Retrieved from <https://www.egalite-femmes-hommes.gouv.fr/publications/droits-des-femmes/lutte-contre-les-violences/premiers-resultats-de-lenquete-virage-violences-et-rapports-de-genre/>
- Jean-Yves Dupeux (2012). La réouverture des actions de la loi de 1881. *Legicom, N° 48*, 129-135.
- Jim Dwyer & William K. Rashbaum, John Elignon (2011. 6. 30). Strauss-Kahn Prosecution Said to Be Near Collapse. *The New York Times*. Retrieved from <https://www.nytimes.com/2011/07/01/nyregion/strauss-kahn-case-seen-as-in-jeopardy.html>
- Julien Licourt (2018. 8. 24). Outreau, le séisme qui aurait dû bouleverser la justice. *Le Figaro*. Retrieved from <https://www.lefigaro.fr/actualite-france/2018/08/24/01016-20180824ARTFIG00008-outreau-le-seisme-qui-aurait-du-bouleverser-la-justice.php>
- Assemblée nationale (2006). La commission d'enquête chargée de rechercher les causes des dysfonctionnements de la justice dans l'affaire dite d'Outreau et de formuler des propositions pour éviter leur renouvellement.
- Le Point (2015. 5. 27). Le quatrième et dernier condamné d'Outreau disculpe lui aussi Daniel Legrand. Retrieved from https://www.lepoint.fr/societe/le-quatrieme-et-dernier-condamne-d-outreau-disculpe-lui-aussi-daniel-legrand-27-05-2015-1931609_23.php
- Le Monde (2005. 12. 5). Les acquittés d'Outreau reçoivent des excuses de Jacques Chirac. Retrieved from https://www.lemonde.fr/societe/article/2005/12/05/les-acquittes-d-outreau-recoivent-les-excuses-de-jacques-chirac_717845_3224.html
- Le Monde (2011. 7. 11). La chronologie de l'affaire DSK. Retrieved from <https://www.lemonde.fr/dsk/article/2011/07/01/le-film-de-l-affaire-strauss->

- kahn_1543285_1522571.html
- Le Monde (2020. 6. 20). Une année d'enquête sur les féminicides racontée par les journalistes du Monde. Retrieved from https://www.lemonde.fr/societe/article/2020/06/02/une-annee-d-enquete-sur-les-feminicides-racontee-par-les-journalistes-du-monde_6041497_3224.html
- LNN (2019. 2. 18). #Lesmotstuent : 350 articles épinglés et un début de questionnement dans les médias. Retrieved from <https://www.lesnouvellesnews.fr/lesmotstuent-350-articles-epingles-et-un-debut-de-questionnement-dans-les-medias/>
- Lorraine Millot (2011. 5. 23). Piroska Nagy, le premier écart médiatisé de DSK. *Libération*. Retrieved from https://www.liberation.fr/france/2011/05/23/piroska-nagy-le-premier-ecart-mediatisé-de-dsk_737557
- Léonore Le Caisne (2016). Quand dire, c'est faire taire. *La Découverte N° 196*, 207-234.
- Marion Thorin (2019. 10. 20). Affaire Dutroux : marche noire organisé à Bruxelles ce dimanche. *Ouest France*. Retrieved from <https://www.ouest-france.fr/societe/justice/affaire-dutroux-marche-noire-organisee-bruxelles-ce-dimanche-6569314>
- Pascal Galinier & Acacio Pereira (2006. 2. 1). Outreau, de la tempête médiatique au naufrage judiciaire. *Le Monde*. Retrieved from https://www.lemonde.fr/actualite-medias/article/2005/12/03/outreau-de-la-tempete-mediatique-au-naufage-judiciaire_717152_3236.html
- Prenons la Une (2014. 3. 2). Femmes à la une. *Libération*. Retrieved from https://www.liberation.fr/ecrans/2014/03/02/femmes-a-la-une_983970
- Pierre de Montalivet (2012). Les droits et libertés constitutionnels invocables en matière de communication. *Legicom, N° 48*, 5-11.
- Raphaël Stainville (2012. 3. 3). Sese, mensonges et médias, retour sur l'affaire DSK. *Le Figaro*. Retrieved from <https://www.lefigaro.fr/actualite-france/2012/03/01/01016-20120301ARTFIG00801-sexe-mensonges-et-medias.php>
- Syndicat national des journalistes (1918). Charte d'éthique professionnelle des journalistes.
- WHO (2012). Comprendre et lutter contre la violence à l'égard des femmes.

Yves Clarisse (2011. 3. 18). L'omerta médiatique française sur la vie privée en sursis. *Reuters*. Retrieved from <https://fr.reuters.com/article/topNews/idFRPAE74G0M220110517>